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허민근 의원 외 14명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허민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허민근·강승수·김민성·김영길
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
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
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15명)

1. 제안이유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 2) 「도로교통법」 제2조
-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5) 「도로법」 제23조

나. 부서검토: 교통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관할 도로에 대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
·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6조(노면 색깔유도선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노면 색깔유
도선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
다.

제7조(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교통안전 관
련기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다. (생략)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
· 보수 및 유지

마.~하 (생략)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더 (생략)

5.~7. (생략)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33. (생략)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交通安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⑤ (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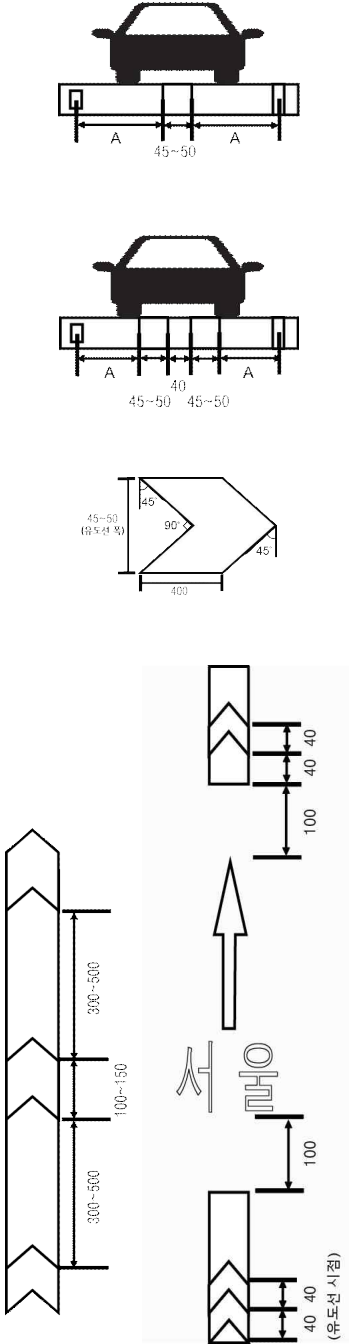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II. 개별기준

(1.~4. 생략)

5. 노면표시

525의 3	노면색 갈유도 선표시		· 교차로, 나들목,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선을 표시하는 것	·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실선과 백색의 갈매기 표시를 혼용하여 설치 · 노면색갈유도선 내에 일정 간격으로 표시되는 갈매기 표시는 도로의 제한 속도에 따라 표시 간격을 조정 · 1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2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과 녹색 또는 연한녹색으로, 3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으로 설치
-------------------	----------------------------	--	---	---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교통정책과

조 레 명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 주요 사항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3조 ~ 제4조)
-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 ~ 제6조)
-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제7조)

☐ 검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 소요예산: 해당없음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1.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 따라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할 경우 설치 비용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추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하며
- 현재 시급하게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없어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미만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정경수(☎054-480-6272)